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2월 24일, 엄태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2월 2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2.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5.9.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9.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임태영)

공간정보는 다른 공간정보 또는 행정정보 등과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할 수 있는 디지털 경제 핵심 정보로서, 다른 정보들과 잘 융복합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공간정보를 지정·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공간정보(33종)를 지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개념적·선언적 규정에 불과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함에 따라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생성한 공개제한 공간정보까지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보안심사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관리기관별로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보안심사 전문기관에 보안심사를 중복으로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권한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일원화하고 보안심사 기준을 간소화하는 한편, 민간기업이 자체 구축·생산하는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시설에 대한 보안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우리나라의 국가공간정보정책은 1995년의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00년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 법률」(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제정(2000. 1. 21. 제정, 2000. 7. 1. 시행)됨으로써 그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미래의 공간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공간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행정의 근거를 확충하며, 관련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왔음.

공간정보 관련 기술 및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합리성과 이용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패러다임이 현실세계를 분석·예측·관제하는 ‘디지털 트윈국토’로 진화하고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규모가 증대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는 기본공간정보의 개념과 관리 체계를 재편하고 국가공간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기본공간정보와 관련된 행정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공간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 심사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가공간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효율성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기본공간정보를 기초로 한 공간정보의 융복합 및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공간정보 기반 행정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4. 대체토론 요지

(생략)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 : 권영진)

권영진의원, 엄태영의원, 김도읍의원 및 송기현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함.

6. 찬반토론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